의 안 번 호	1598	【울산광역시 중구 지역보건법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검토경과

가. 제출일자 및 제출자 : 2019. 12. 3.(화) 울산광역시 중구청장

나. 위원회 회부일자 : 2019. 12. 3.(화)

다. 위원회 심사일자 : 2019. 12. 16.(월)

2. 제안이유

과태료의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다른 법률에 우선 적용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 행정안전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징수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을 따르도록 하고 「지방세기본법」 준용 부분은 삭제(안 제12조)

4. 근거법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5. 검토의견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우선 적용 사항을 반영하고 행안부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조문 일부를 정비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의견은 없음.

근 거 법 규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법률상 의무의 효율적인 이행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질서위반행위의 성립요건과 **과태료의 부과·징수** 및 재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과태료의 부과·징수, 재판 및 집행 등의 절차에 관한 **다른 법률의 규정 중 이 법의 규정에 저촉되는 것은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